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
일부개정법률안

제출자	국무위원 권덕철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만 2세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 영아수당을 지원함에 있어, 연령도래 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근거한 양육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양육수당 수급신청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, 영아수당 수급 아동의 연령도래 시 양육수당 수급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하여 영아수당 수급이 종료되면 별도 신청 없이 양육수당으로 이어서 수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 별도 신청 없어도 양육수당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(안 제35조의6 제2항 신설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(영아수당)을 수급하는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5조의6(비용 지원의 신청방법·절차) ① 생략 <u><신 설></u>	제35조의6(비용 지원의 신청방법·절차) ① 생략 <u>②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(영아수당)을 수급하는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.</u>
<u>② ~ ⑤</u> 생략	<u>③ ~ ⑥ (현행 ② ~ ⑤와 같음)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567